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안내

2012. 8.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1
2. 신용거래대주도 공매도에 포함되나요?	2
3. 증권사의 주식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을 차입한 후에 매도하는 거래도 공매도에 포함되나요?	3
4. 신용거래대주 또는 증권사 중개 차입주식 매도 외에 공매도에 해당되는 거래가 또 있나요?	4
5. 공매도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5
6.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무엇인가요?	7
7. 순보유잔고보고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8
8. 개인은 공매도 규모도 적은데 왜 보고를 해야 하나요?	9
9. 공매도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이 보고를 해야 하나요?	10
10. 공매도 포지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11
11. 보고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13
12. 발행주식총수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15
13.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6
14.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18
15. 보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19
16. 최초 보고의무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20
17. 금감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18.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22
19. 개인투자자에 대한 권고사항	23

1.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면,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일반매도라고 합니다.
 - 공매도를 하더라도 주문체결일로부터 2일 후에는 주식을 인도(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는 결제해야 할 주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 공매도는 크게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됩니다.
 - 차입공매도는 결제에 사용할 주식을 미리 빌려온 후 매도주문을 하는 거래를 뜻하고,
 -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 차입공매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허용되고 있는 거래형태이지만, 무차입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2. 신용거래대주도 공매도에 포함되나요?

- 신용거래대주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주식의 결제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거래대주 주식의 매도 거래도 (차입)공매도입니다.

3. 증권사의 주식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을 차입한 후에 매도하는 거래도 공매도에 포함되나요?

- 일부 증권사에서는 개인 고객간에 주식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즉 개인 고객도 증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법인(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온 후, 이중 자신이 원하는 수량만큼 증권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빌려온 주식 수량중 매도한 수량은 (차입)공매도에 해당됩니다.

4. 신용거래대주 또는 증권사 중개 차입주식 매도 외에 공매도에 해당되는 거래가 또 있나요?

-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에서 다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주식을 빌려와서 증권사에 입고한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 하는 행위도 공매도에 해당합니다.

- 다만 빌려온 주식을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다시 매각시에는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공매도 포지션은 무엇인가요?

□ 공매도 포지션은 거래하고 있는 종목별로

① 신용대주매도 잔고 수량

② 증권사 중개를 통해 차입하여 매도한 주식의 잔고수량

③ 기타 장외(지인 등)에서 빌려와서 장내에서 매도한 주식의 잔고 수량의 합계(①+②+③)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외래어인 '포지션(position)'이란 용어는 우리말로 '잔고'를 뜻합니다.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A전자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 甲의 거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甲은 201×8.10. B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같은날 B증권사를 통해 A전자 주식 1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어서 201×8.15. A전자 주식 3주를 매수하여 신용대주 주식을 상환하였습니다.

➤ 그럼, 투자자 甲의 일자별 공매도 포지션은

201×8.10.에는 매도한 주식의 잔고 10주이고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10주입니다.

201×8.15.에는 상환한 3주를 차감한 매도 주식의 잔고는 7주입니다.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7주입니다.

△ 주의할 점은, 상기사례에서 甲은 A전자 주식을 B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사례는 '10. 공매도 포지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 D증권사에세 제공하는 대차거래 서비스를 통해 B화학 주식 20주를 차입한 투자자 乙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乙은 201×9.13. D증권사의 증개로 B화학 주식 20주를 빌려왔습니다.

➤ B화학 주가가 하락할 조짐이 보이자 乙은 201×9.15. 빌려온 주식중 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빌려온 주식중 남은 주식 = 14주 = 20주 - 6주)

➤ 실제 201×9.15.부터 B화학 주가가 하락하자 乙은 빌려온 주식중 남은 주식 14주에서 5주를 201×9.20 더 매도했습니다. (빌려온 주식중 남은 주식 9주 = 20주 - 6주 - 5주)

➤ 그럼 투자자 乙의 일자별 공매도 포지션은

201×9.13.에는 공매도 포지션이 없습니다.

💡 빌려오기만 했을 뿐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은 0입니다.

201×9.15.에는 매도한 주식의 잔고 6주입니다.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6주입니다.

201×9.20.에는 매도한 주식의 잔고 11주입니다. (6주 + 5주)

💡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11주입니다.

6.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무엇인가요?

-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동 수량이 기준비율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비율은 **0.01%**로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7.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요?

□ 순보유잔고보고와 공매도 포지션보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 ▶ 순보유잔고는 종목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빌려와서 매도한 수량을 뺀 것으로, 만약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와서 매도만 했다면 순보유잔고는 음(마이너스)의 값을 갖게 되며*,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공매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 예) ① 주식이 전혀 없다 : 갖고 있는 수량도 0, 빌려오지도 않았으므로 0, 따라서 순보유잔고는 $0 - 0 = 0$

② 그런데 **전자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따라서 신용대주를 통해 빌려서 팔자고 결심했다 : 아직까지 순보유잔고는 0으로 변동 없음

③ 201×10.2 A증권사에 신용대주계좌를 개설했다 : 순보유잔고는 아직 까지도 0으로 변동 없음

④ 201×10.4 ** 전자 주식을 신용대주계약에 근거하여 4주 매도했다 : 갖고있는 수량은 0, 빌려와서 판 수량이 4주이므로 순보유잔고는 $0 - 4 = -4$, 즉 마이너스이므로 공매도 포지션

⑤ 201×10.7 **전자 주식을 추가로 3주 매도했다 : 갖고있는 수량은 0, 빌려와서 판 수량의 누적수량은 7주이므로 순보유잔고는 $0 - 7 = -7$, 즉 마이너스이므로 공매도 포지션

⑥ 201×10.9 **전자 주가가 단기 바닥권으로 판단되어 7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여 신용대주를 상환하였다 : 갖고 있는 수량은 0, 빌려와서 판 수량의 누적 수량은 이제 0이므로 순보유잔고는 $0 - 0 = 0$

- ▶ 순보유잔고 보고는, 종목별로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면 보고한다는 뜻으로, 결국 공매도 포지션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보고하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8. 개인은 공매도 규모도 적는데 왜 보고를 해야 하나요?

-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 증시불안 등의 시기에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 거래에의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아,
 -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한편, 시장 전체의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보고기준비율을 낮출 수 밖에(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없고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공매도 거래자를 보고의무 대상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국내 금융기관, 외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 등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 보고절차가 다소 번거롭지만,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홍콩(0.02%) 및 호주(0.01%)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매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9. 공매도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이 보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중에서도 공매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동 의무가 적용됩니다.
- ▶ '5. 공매도 포지션은 무엇인가요?'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일 종목별로 공매도 포지션을 계산한후에 동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0.01%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즉, 아래 산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frac{\text{종목별로 매일 계산한 공매도포지션}}{\text{그 종목의 해당일자 발행주식총수}} \geq 0.01\%$$

10. 공매도 포지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하나의 증권사만 이용시에는 당해 증권사의 신용대주잔고 또는 차입매도잔고의 종목별 수량이 공매도 포지션에 해당됩니다.

▶ 즉, A증권사에 b주식과 c주식의 신용대주잔고가 각각 10주와 20주이면 그 각각의 수량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 그러나 여러개의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같은 종목을 거래하거나, 실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 및 사용계좌에 관계 없이 같은 종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전부 더해야 공매도 포지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가령 A증권사에서는 △△전자 주식에 대해 30주의 신용대주잔고가 있고

② B증권사에서는 대차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주식 50주를 차입한 후 이중 20주를 매도하였고

③ C증권사의 c1계좌에는 △△전자 주식 4주를 보관하고 있고, c2계좌에는 자신의 소유이지만 명의만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전자 주식 6주를 보관하고 있으며

④ 개인 금고에 △△전자 주식을 실물로 5주를 보유하고 있을때

▶ 위 사람의 포지션은

-30주 [①, 신용대주잔고] +

-20주 [② 차입한 주식중 매도한 잔고] +

+4주 [③ C증권사의 c1계좌] +

+6주 [③ C증권사의 c2계좌, 명의는 다른 사람이지만 본인소유분] +

+5주 [④ 개인금고에 보관]
=-35주입니다.

- 여기에서 ①과 ②에서 신용대주잔고와 차입매도잔고를 음(마이너스)의 숫자로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기 사례의 사람의 포지션은 **-35주**로 공매포지션인 상태입니다.
- 만약 △△전자의 발행주식총수가 20만주라고 가정한다면, 보고기준 비율이 0.01%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매도 포지션 수량은 -20주 (20만주×0.01%)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포지션이 -20주 이하로 하락 (-20주, -21주, -22주...)하게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11. 보고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 종목별로 공매도 포지션인 상황에서 일별로 동 포지션이

① 당해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기준비율) 이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② 그 이후에 주식을 전혀 거래하지 않아도 0.01% 이상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보고의무가 매일 발생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일별은 매일 자정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장중에 신용대주잔고가 기준비율 이상이었으나 장 마감전 매입상황을 하게되어 기준비율 미만이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은, 공매도 포지션은 음수(예 -20주, -30주 등)이므로 동 음수의 절대값(예 +20주, +30주 등)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수량이 기준비율 0.01%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면, A상장회사 보통주의 발행주식총수가 1천만주라고 가정 하면, 보고기준비율이 0.01%이므로 보고기준수량은 1천만주에 0.01%를 곱한 1천주입니다. 다만 공매도 포지션은 음수(-)를 말하므로 보고기준수량의 정확한 표현은 -1천주입니다.

① 공매도 포지션이 처음으로 -1천주 또는 그 이하가 되거나 (예 : -1,000주, -1,003주)

② -1천주 이하가 되어 처음으로 보고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동 수량이 계속 유지되거나 (예 : -1,000주, -1,003주)

②' -1천주 이하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매도하여 공매도 포지션이 더 늘어나는 경우 (예 : -1,004주, -1,005주 ...)

- ①, ②, ②' 모두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편의상 ①을 최초보고, ②와 ②'를 계속보고라고 합니다.

△ 중요한 점은 상기 사례에서 공매도 포지션이 -1천주 이하인 상태가 유지되면 그 후에 거래가 전혀 없어도 매일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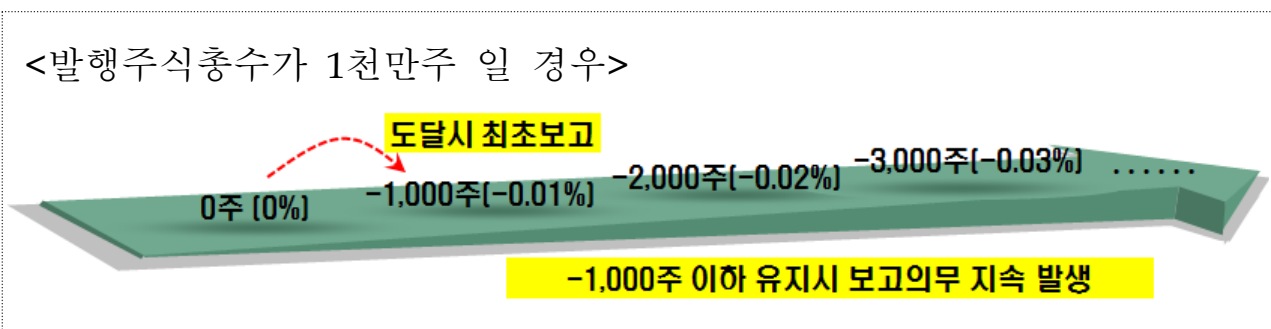
□ 상기사례에서 -1천주 이하인 상태였다가 매입상황을 하거나 차입 상황을 해서 그 잔고수량이 -1천주 이상이 되면(예 -999주, -998주 ...) 그 때부터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 다시 -1천주 이하가 되어야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의할 점은 위에서 예로 든 1천주는 발행주식총수가 1천만주인 경우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 발행주식총수가 2천만주이면 보고기준수량은 2천주(2천만주 × 0.01%)가 되고, 3천만주이면 3천주(3천만주 × 0.01%)가 됩니다.

- 다시말해 보고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01%입니다.



12. 발행주식총수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상장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http://kind.krx.co.kr>)

➢ '상장법인현황 - 주식발행내역'에 접근하신후 법인명란에 조회를 원하시는 종목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회기간을 설정 (가급적 전체)

회사명	상장일	상장방식	추가상장
발행사유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	발행일	2012-07-12
액면가	500	발행가	6,443
발행주식수	46,502	누적발행주식 수	13,516,004
증가자본금	23,281,000	누적종목자본 금	6,758,002,000

□ HTS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통상 HTS에서 발행종목의 주식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는 일반 포털 홈페이지(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종목명 검색을 통해 발행주식총수를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13.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일을 계산할 때에는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상기그림에서 공매도 포지션은 8.10(금)에 처음으로 -0.01%가 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어서 8.13(월)에는 별다른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공매도 포지션이 계속 -0.01%이므로 보고의무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 그리고 8.14(화)에는 추가 매도를 해서 공매도 포지션이 -0.02%로 떨어졌으므로(다시말해 -0.01% 이하이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8.11(토)과 8.13(일), 8.15(수) 등은 토요일과 공휴일이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8.10(금)에 발생한 보고의무는 3영업일이 되는 날이 8.16(목)이므로 8.16(목) 오전 9시까지 보고해야하고,

➢ 8.13(월) 발생한 보고의무는 8.17(금) 오전 9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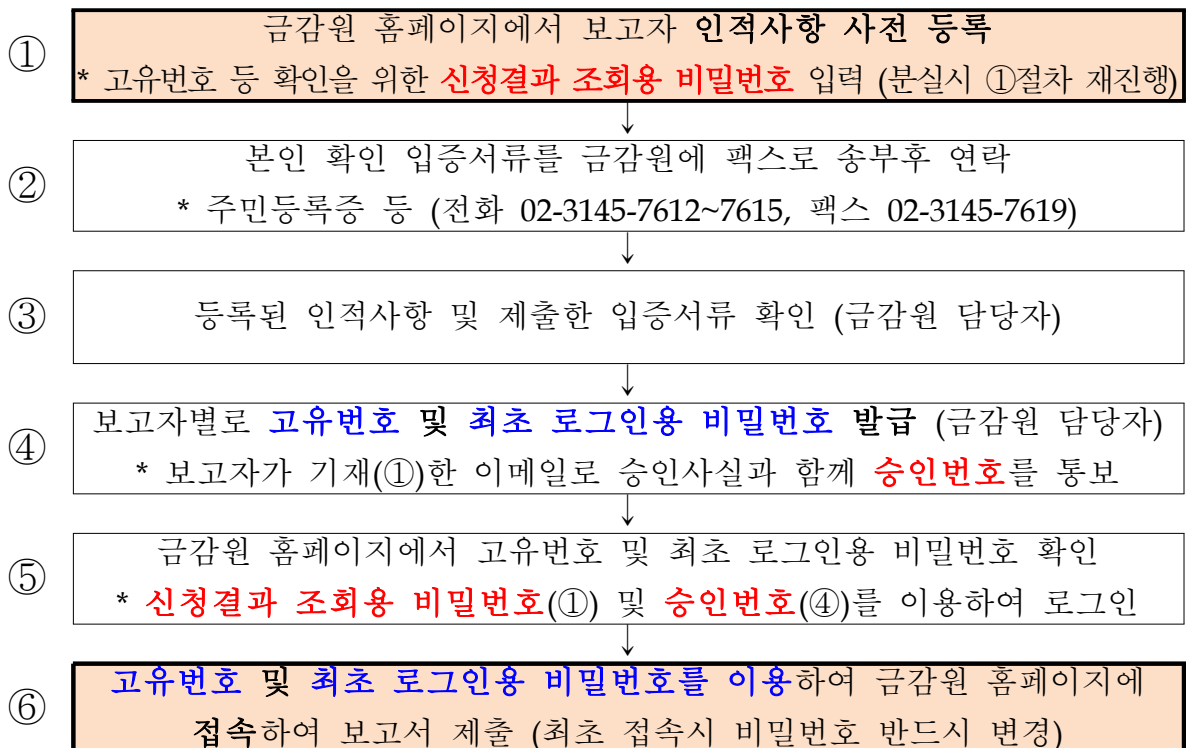
- 8.14(화) 발생한 보고의무는 8.20(월) 오전 9시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8.10(금) 보고의무 발생분은 8.10(금) 당일에 보고하거나, 8.13(월) 또는 8.14(화), 8.16(목)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8.16(목) 보고시에는 오전 9시까지)
- 마찬가지로 8.13(월) 보고의무 발생분은 8.13(월) 당일에 보고하거나, 8.14(화) 또는 8.16(목), 8.17(금)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단 8.17(금) 보고시에는 오전 9시까지)
- 이 경우, 8.10(금) 보고의무 발생분과 8.13(월) 보고의무 발생분을 모아서 8.13(월) 또는 8.14(화) 또는 8.16(목)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8.16(목)에 제출시에는 8.10(금) 보고의무 발생분의 보고시한이 오전 9시까지이므로 동 시간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한번에 모아서 일괄 제출시에는 반드시 보고의무 발생일 순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즉, 앞서 설명한 8.10(금) 보고의무 발생분과 8.13(월) 보고의무 발생분을 8.14(화)에 제출시에는 하나의 보고서에 8.10(금) 분을 먼저 기재하고 이어서 8.13(월) 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보고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공매도 포지션보고」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14.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동 자료는 자동으로 한국거래소에도 송부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제 제출일의 3일 정도 전) 접속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하고 금감원의 승인을 거쳐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최대 2일(아래 ①~④)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미리 인적사항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 후에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절차 >



15. 보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보고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종목명과 종목코드, 시장구분)
 - 보고자에 관한 사항*(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관한 사항 포함)
 - *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공모도 포지션[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보고의무발생일, 공모도 포지션[=순보유잔고] 수량, 보고대상주식의 발행주식총수, 공모도 포지션[=순보유잔고] 비율)

16. 최초 보고의무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12.8.30(시행일) 이후(시행일 당일 포함) 최초로 제출한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을 때 당일의 마감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의 -0.01% 이하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예시)

사례1

- ▶ '12.8.29. 순보유잔고 -0.02%
- ▶ '12.8.30. 순보유잔고 -0.02% → 공매도 거래가 없으므로 보고의무 없음
- ▶ '12.8.31. 시행일 이후 최초 공매도 거래, 당일 마감 순보유잔고 -0.03% → **보고의무 발생**

사례2

- ▶ '12.8.29. 순보유잔고 -0.02%
- ▶ '12.8.30. 순보유잔고 -0.02% → 공매도 거래가 없으므로 보고의무 없음
- ▶ '12.9.12 매수(short cover), 당일 마감 순보유잔고 -0.005% → 보고의무 없음
- ▶ '12.9.14 시행일 이후 최초 공매도 거래, 당일 마감 순보유잔고 -0.01% → **보고의무 발생**

사례3

- ▶ '12.8.29. 순보유잔고 -0.02%
- ▶ '12.8.30. 시행일 이후 최초 공매도 거래, 당일 마감 순보유잔고 -0.03% → **보고의무 발생**

17. 금감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고서 제출은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금감원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고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팩스 및 이메일(secmarket@fss.or.kr)로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와 이메일 동시 제출)

*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영업일중 07:00~09:00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09:00~19:00 시간대에 8시간 이상 장애 발생시에 한함

□ (보고서식)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8조 규정에 의한 보고)			
금융위원회 귀중		보 고 일 :	년 월 일
한국거래소 귀중		보 고 자 :	
1. 주식에 관한 사항			
종목명	시장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상장법인 <input type="checkbox"/> 코스닥상장법인	종목코드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성명(명칭)	한글	한지(영문)	
보고자 구분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3.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발생일	순보유잔고수량 (주)	보고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주식의 발행총수 (주)	순보유잔고비율 (%)

18.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 제도 운영 관련 (공매도 제도 전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 2156-9872

□ 보고서 제출 관련 (인적사항 등록 절차, 보고서 작성요령 등)

➤ 금융감독원 증권시장팀 02) 3145-7612~7615

19. 개인투자자에 대한 권고사항

-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포지션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여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차입매도 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보유정보를 집중한후 해당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증권사는 타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나 실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특정 증권사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일괄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